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2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 D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대 95㎡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3.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 대 95㎡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D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5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3. 3.경 상속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E 대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들 2명이 각 1/2 지분씩 공유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9.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3. 11.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변제기 2011. 12. 31., 이율 및 지연손해금을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가소22389호).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9.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가소16호).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1.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나93083호), 2022. 11. 30.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등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